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진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3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6일
발 의 자 : 정진철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 김경영, 김달호,
김정환, 박기재, 송명화,
이준형, 전병주, 채유미
의원(9명)

1. 제안이유

- 도심권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대단지 공동주택단지 거주 지역주민과 주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유·초·중등 학생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은 인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이를 막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여 개별 사업자가 즉시 자체 부담하여 신속히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지원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이 악취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약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시장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방보조금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취방지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자치구별 지방보조금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예산규모 및 지원비율
2.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시설 및 우선순위
3. 지방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방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4조 관련)

1. 복합악취

구 분	공업지역(희석배수)	기타 지역(희석배수)
배출구	500 이하	300 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	10 이하

2. 지정악취물질

구분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ppm)
		공업지역
1	암모니아	1 이하
2	메틸머captan	0.002 이하
3	황화수소	0.02 이하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이하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6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7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8	스타이렌	0.4 이하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029 이하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13	톨루엔	10 이하
14	자일렌	1 이하
15	메틸에틸케톤	13 이하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1 이하
17	뷰티르아세테이트	1 이하
18	프로피온산	0.03 이하
19	n-뷰티르산	0.001 이하
20	n-발레르산	0.0009 이하
21	i-발레르산	0.001 이하
22	i-뷰티르알코올	0.9 이하

문서번호	2021051300000006
------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정진철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민향식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5.13	
회신일 : 2021.05.25	내용문의 : 02-2180-7933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에서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제6조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제5조 및 그 각 호에 의거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자치구 별 지방보조금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방보조금의 예산규모 및 지원비율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아직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예산분석팀장 민향식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 02-2180-7933

e-mail : ehdus0@seoul.go.kr